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469 호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6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이양섭 의원 등 7명  |
| 발의연월일 | 2016년 9월 27일 |

#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양섭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69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년 9월 27일

발의자 : 이양섭, 이광희, 김영주,  
박우양, 박종규, 윤은희,  
황규철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,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,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설치, 기금 '운영'을 관계 법령에 따른 '운용'으로 개정 (안 제1, 2조)

나. 기금의 용도에 관해 포괄 규정으로 변경 (안 제5조)

- (현행) 학자지원금, 직업훈련지원금, 자립정착금, 평생교육시설 기자재 등 지원
- (개정) 학자금지원, 자립 및 직업훈련 지원, 청소년 평생교육 지원, 그 밖에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

다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(안 제8조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호에 따라 생략

라. 협의 :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함.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469 호

##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설치운영**” 을 “**설치·운용**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의 출연금

제2조제2호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로 구분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제1항 중 “**통합기금**” 을 “**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**” 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

2.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

3.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

4.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

제6조를 삭제하고, 제7조를 제6조로 하며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<u>설치운영</u>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조(목적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설치·운영</u> -----<br/>-----.</p>   |
| <p>제2조(기금구성)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2. <u>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</u></p> | <p>제2조(기금구성) -----<br/>-----.</p> <p>1.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</u></p> <p>2. <u>기금의 운용 수익금</u></p> <p>3. <u>그 밖의 수입금</u></p> |
| <p>제4조(기금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<u>통합기금</u>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4조(기금관리·운용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</u> -----<br/>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|
| <p>제5조(기금지급대상등) ① 기금의</p>  | <p>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</p>  |

지급대상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·미진학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지급한다.

1. 학자(진학)지원금 :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초·중등교육법에 정한 중·고등 학교 입학,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

2. 직업훈련지원금 :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

3. 자립정착지원금 : 농·어촌 정착 의욕이 확실하고 영어·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·어촌청소년

②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

2.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

3.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

4.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

제6조(대상추천자 및 선발) ① 지원 사업 기금지원 대상자는 시장·군수가 시·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

<삭 제>

|   |   |
|---|---|
| <p><u>의결을 거쳐 추천한다. 단,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청소년은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·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.</u></p> <p>제7조(지급정지 및 회수등)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| <p>제6조(지급정지 및 회수등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| <p><u>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|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